

## 표창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규칙 제9장 제21~23조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조명 및 전기설비의 학술 및 기술에 관하여 뛰어난 업적을 이루도록 가치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상) 본 학회의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학술대회 발표상, 기술상, 특별상, 우수졸업생 표창으로 한다.

제3조(공로상)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조명 및 전기설비 학술 및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2. 본 학회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자

제4조(학술상)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학술 및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술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2.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학술보급과 계몽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제5조(논문상)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우수한 논문의 저자
2. 논문은 전년도 총회개최 다음 월호부터 당해년도 총회 전 월호까지 본 학회지의 논문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학술대회발표상)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춘·추계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원고
2. 수상자 선정은 대회시 좌장회의에서 선정한다.
3. 수상은 정기총회시 수여하되, 추계와 총회를 동시 개최시는 추후 개별로 상장을 송부한다.

제7조(기술상) 본 학회의 특별회원 및 신기술·우수제품 전시회 참여업체 중에서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제품, 설비 및 방식 등을 새롭게 완성하거나, 개량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업체에게 수여한다.

제8조(특별상) 기부자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조명·전기설비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게 표창하며, 상의종류 및 상금 등은 별도의 특별상 수여 규정에 따른다.

제9조(우수졸업생 표창) 국내 대학(교)의 본 학회 관련학과 우수졸업(예정)자에 대한 장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할 수 있다.

1. 학과(부)장이 추천한 자로서 해당 지회장이 재청한 자를 학회 상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다만, 지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 지회장 재청은 본회 임원으로 한다.
2. 수상자 수는 해당 지회별로 전년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1/100 이내로 하되, 최소 인원은 1인으로 한다.
3. 수상자에게는 학회장 표창장 및 부상으로 해당년도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를 면제하여 준다.

제10조(우수편집인상)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논문투고 심사위원으로 크게 기여한 자
2. 학회지 편집원고 집필에 크게 기여한 자

제11조(수상의 제한) 과거의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에 대하여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학술상 7년) 이내에는 재수상 할 수 없다.

1. 이 규정은 1987년 04월 08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6년 10월 0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09월 0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8조, 11조)
4.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9조)
5.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0조)